

## 가연물 및 발화물질, 방염 관리 규정

1. **규정준수:** 중앙대학교 실내로 가연물과 발화물질을 반입하여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, 가연물 및 발화물질 반입·설치·사용 승인서(이하 승인서라 함)를 교부받아야 한다.
2. **방염성능기준:** 반입 물품의 방염성능은 소방법에서 정한 방염성능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승인서에 방염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.
3. **방염 시료품 제출:** 사용자는 반입 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입 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(크기: W: 29cm × H: 19cm)를 중앙대학교에 제출하거나 반입 물품에서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4. **방염성능 검사:** 제출한 시료품(혹은 채취물)은 사용자 입회 하에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, 제 2조의 규정 성능에 미달할 시 실내 반입을 불허하며, 사용자는 제2조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**발화 및 반입물질:** 가연물 중 휘발유, 신나, LP가스 등의 인화성 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, 라이터, 촛불, 화약류 및 용접기 등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6. **안전관리자 선임:** 사용자는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사용 및 설치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중앙대학교의 작업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7. **추가조치 사항:** 중앙대학교 관리부서 및 관계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사용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한다.
8. **방염서류:** 가·나 조항은 스태프 회의 시 제출, 다·라·마 조항은 장치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장치물을 반입할 수 없다.
  - 가. 방염 접수증
  - 나. 방염 확인서: 1) 공연제목 표기  
2) 작업사진 첨부: 사진에 작업한 날짜가 반드시 표시 되어야 한다.  
3) 작업사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컬러사진 및 컬러 프린트물로 제출
  - 다. 방염성능시험 성적서(소방서 발급)
  - 라. 방염성능검사 확인서(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)
  - 마.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결과서(예: 섬유기술연구소 등)
9. **제출처:** 중앙대학교 총무팀(서울) 아트센터

##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

1. 미승인 가연물 및 발화물질은 실내 반입을 불허한다.
2. 실내에서 제작 및 가연성 도료 작업은 불허한다.
3. 승인받은 가연물 및 발화물질이라도 실내사용 시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4. 소방시설물 주변에 무대장치물을 쌓아놓아서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작업자는 주변 2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5. 작업 외 불필요한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6. 작업자 전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7. 작업 전후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8.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질병자는 작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.
9. 승인된 가연물 및 발화물질 사용 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근접거리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10.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대관자가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.
11. 상기 수칙 위반 시 1차 시정 경고한다. (위반자 조치)
12. 1차 시정 경고 불응 및 미조치 시 작업 중지 또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. (위반자 조치)

